[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-16호]

2020년도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공고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제주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현대산업, 기술 등을 융합한 상품의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0년도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○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발굴을 통하여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제주문화원형 콘텐츠 잠재력 발굴

2.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0년 10월 15일(목)

○ 사업대상 :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내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개인 창작자

※ 공고일 기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우대가점(2점) 부여

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 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  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  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 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 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 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 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 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 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 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 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○ 사업내용

- 제주문화원형 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 6건

※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.

※ ‘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’의 정의

: IT, SW,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서로 융화되고 결합되면서 기존의 산출물과 견주어 현저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하여 발굴한 유형의 문화상품 제작지원.

※ ‘유형의 문화상품’ 정의

: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2호에 따른 ‘문화상품’ 중 유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

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문화상품"이란 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(이하 "문화적 요소"라 한다)이 체화(體化)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무형의 재화(문화콘텐츠,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)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.

(예) **19년도 수행과제 예시**: 제주도 특정장소의 종이접기 상품을 조립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, 해당 자연문화지형의 정보를 AR로 보여주는 상품.

※ 단순 라이선싱이나 이미지 프린팅 등 단순 제작은 ‘융복합’ 사례로 보지 않음.

(예) 수공예작품, 라이선스 제품 제작, 티셔츠 실사 출력 등 지원 불가.

○ 사업지원규모

- 총 138백만원(총 6건 지원, 건당 23백만원)

○ 지원조건

- 최종결과물(상품)은 국내외 상업적으로 대량생산하여 유통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함
- 결과평가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최종 산출물을 산출할 수 있는 기업(창작자)

※ 결과평가 당일까지 산출물 당 각 5점씩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산출물(각 5점씩)의 소유권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으로 양도함.

- 상품경쟁력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진흥원에서 시행할 예정, 지원기업은 필수적으로 해당 강좌를 이수하여야 함

※ 주요분야: 인증, 특허, 상품화, 패키징 등

- 선정 시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)

- 이미 상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혹은 개발완료가 된 상품은 지원불가
- 단순 라이선싱이나 이미지 프린팅 등 단순 제작 또한 지원불가
- 협약종료일까지 과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, 선정 이후에도 협약취소 및 지원금 환수, 민·형사상 법적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.
- 선정과제는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 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(이용허락권)은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가짐.
  ※ 이용허락권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임의변경, 방송·전시·교육·광고·홍보 등 수상작의 활용과 타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 포함(전시, 녹화, 도록 수록·배포, 교과서 게재 등)
- 선정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15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하며,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은 지출불가
  ※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함

3. 평가방법

○ 선정방법: PT발표 및 과제계획서 종합평가

○ 선정기준

-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종합합산점수로 산정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주안점	배점
창작품의 우수성	○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콘텐츠 상징성 ○ 기술,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독창성	30점
창작품의 경쟁력	○ 계획된 창작품의 상품성과 대중성 정도 ○ 제작물의 시장성(유통/상품 가능성) 및 수익창출 가능성	20점
사업 수행역량	○ 사업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○ 신청자 및 팀원의 사업추진 능력 등 전문성 보유 정도	20점
예산구성 적절성	○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○ 집행계획의 적정성	15점
결과물 활용계획	○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	15점
합계		100점
우대가점	○ 공고일 기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	2점
합계		102점

※ 공고일 기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우대가점(2점) 부여

4. 신청접수

❍ 공고기간 : 2020년 3월 9일(월) ~ 2020년 3월 27일(금)

❍ 접수기간 : 2020년 3월 24일(화) ~ 2020년 3월 27일(금), 15:00까지

❍ 접수방법 : **담당자 메일 접수(eun@ofjeju.kr)**

-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ofjeju.kr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(※ 해당사업 사업안내서 참조)
- 제출서류는 아래 표의 순서대로 정렬하고 반드시 서명한 후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담당자의 e-mail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, 마감 이후 수정 및 보완 불가. (파일명: 회사(창작자)명_과제명.pdf,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)
- 사업계획서 등 접수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
❍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-65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1층
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앞
☎ Tel : 064) 735-0619 / ✉ E-mail : eun@ofjeju.kr

❍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	원본 1부	○ [사업안내서] 다운로드 후 첨부1, 첨부2 작성
2	지원업체(개인)소개서	1부	○ [사업안내서] 다운로드 후 첨부3 작성
3	사업 참여 서약서	1부	○ [사업안내서] 다운로드 후 첨부4 작성
4	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	1부	○ [사업안내서] 다운로드 후 첨부5 작성
5	신청자격 자가진단서	1부	○ [사업안내서] 다운로드 후 첨부6 작성
6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1부	○ 법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개인사업자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○ 개인창작자일 경우: 주민등록표등본 제출(창작자 이름과 주소만 노출, 기타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)
7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 각 1부	○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제출
8	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	각 1부	○ 주요 계약서,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시) ○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○ 참고 자료(이미지, 파일, 인쇄물 등)

※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 기업(창작자)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※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신청 기업(창작자) 부담

5. 정산 및 지원절차

○ 지원금 신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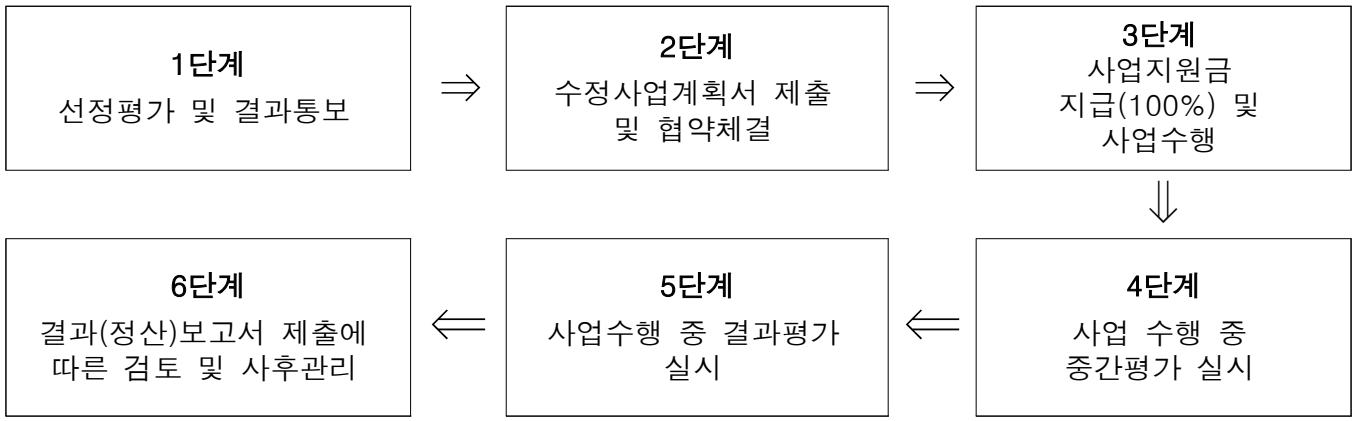

※ 협약체결 이후 집행된 지출에 한해서 인정
※ 최종지원금은 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급

○ 정산내역 증빙자료 : 세부내용은 [붙임1.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 사업안내서] 참조

카드지출	카드매출전표
계좌이체	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- 법인 또는 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- 개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영수증(소득신고 必), 신분증, 통장사본

6. 기타사항

○ 지원조건

-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
-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국내·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

○ 참여제한

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(개인)는 참여불가
-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
-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
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
2020년 3월 9일

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원장